

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의무 관련 세부사항

구분		내용
결핵 및 잠복결핵 공통사항	검진대상	-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 ·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의료기관 장의 지휘·감독 하에 있는 파견·도급·용역 종사자도 포함
	처벌사항	- 미실시에 대해 기관 단위(의료기관의 장)로 과태료 부과 · 1차 위반(100만원), 2차 위반(150만원), 3차 이상 위반(200만원) · 의료기관 장이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더라도 종사자가 검진을 거부 및 미실시한 경우, 과태료 부과 대상
결핵검진	검진시기	- 매년 검진 · <u>신규 채용 또는 휴직/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미종사 후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, 신규 채용 된 날부터 또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</u>
	검진방법	- 흉부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
	검진장소	- 해당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(질병관리청 결핵ZERO 홈페이지(https://url.kr/lutjb4) 내 ‘의료기관 검색’을 통한 확인)
	참고사항	- <u>다른 법령(국민건강보험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)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포함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,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(중복 검사 불필요)</u>
	비고	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에 따른 건강검진 : 근로자에게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명시 · 의료인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의 경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,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 ·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잠복 결핵검진	검진시기	최초 검진 -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 · <u>의료기관에 소속된 총 근무기간(다른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) 중 1회만 실시</u> * 다른기관의 종류 :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
		매년 검진 - 결핵환자를 검진·치료하는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(한의사) ·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‘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’지침(22.07)에 근거하여,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 대한 잠복결핵 감염검진의 매년 검진은 권고 사항
	검진방법	-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(TST)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(IGRA) ·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(TST) :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 후 48-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경결의 크기 측정 ·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(IGRA) :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감염 확인
	참고사항	※ (결핵을 검진·치료하거나 호흡기질환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방하지 않는)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사는 ‘23.6.30. 까지(‘22.7.1 이전부터 근무자의 경우)/신규 채용된 자는 신규 채용 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(‘22.7.1 이후 채용된 근무자)

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의무 관련 Q&A

□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실시 관련

○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는?

·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,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(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)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.

○ 감염검진 의무 기관(의료기관 등)의 종사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?

·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에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종사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.

· 고용의 형태(직접·간접)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장 지휘·감독 하에서 해당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로 볼 수 있음. 다만,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.

· 외부기관 파견 등 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장 지휘·감독 하에 있다면,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의 장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.

· 단 자원봉사자,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과 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, 이를 「결핵예방법」 상 종사자로 보기는 힘드나,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기관의 장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.

○ 잠복결핵 감염검진 관련 ‘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.’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)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?

· 검진 의무가 발생하는 기관 사이의 이동이 발생하더라도,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함 취지임.

* 소속기관 변경 시(예시 : ① A의료기관 → B의료기관, ② A의료기관 → B산후조리원 등), 이전 기관에서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,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됨.

○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?

- 결핵 감염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 감염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총 근무기간(소속기관 변경 상관없음) 중 최초 1회만 실시 함.
- 결핵검진의 경우, 신규 채용 또는 휴직/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미종사 후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, 신규 채용 된 날부터 또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검진 실시해야 함.
- 잠복결핵검진의 경우, 22.07.01 이전에 신규 채용된 의료인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 중 22.07.01 이전에 최초의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, 의료인(한의사) 등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는 23.06.30까지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

○ 검진 대상자가 과거 치료력(결핵·잠복결핵)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 감염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,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?

- 해당 대상자의 경우, 잠복결핵 감염검진(면역학적 검사)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수 있음.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3항제2호)

○ 과거 치료력(결핵·잠복결핵)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 감염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경우, 검진 실시 여부 증빙 방법 및 이전 치료·검진 관련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시 잠복결핵 감염검진(면역학적 검사)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?

- 과거 치료력(결핵·잠복결핵) 또는 과거 잠복결핵 감염검진 시 결과가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진료확인서, 진단서 등)라면 어떤 형태로든 증빙 가능하며, 치료력이나 이전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잠복결핵 감염검진(면역학적 검사)을 실시해야 함.

○ 결핵 및 잠복결핵 관련 정보 및 치료 의료기관은 어디서 알 수 있는지?

- 해당 정보는 ‘결핵제로 홈페이지(<https://tbzero.kdca.go.kr>)’를 통해 ‘결핵바로알기’ 및 ‘의료기관 검색’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.

○ 종사자가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 감염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의료기관의 장이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되는지?

·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 감염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불이익(취업거부, 복직 불허용 등)을 주는 경우 「결핵예방법」 제32조에 따라 기관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.

·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, 취업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(「결핵예방법」 제13조), 이로 인해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.

○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결핵 감염검진(잠복결핵 제외) 실시 갈음이 가능한지?

·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(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)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 감염검진(잠복결핵 제외)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.

□ 처벌사항(과태료) 관련

- 「결핵예방법」 제34조에서 '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'와 관련하여,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지?

· 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,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 각 호에 나열된 기관의 장 등을 말함.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포함)

-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, 부과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?

·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, 기관 등의 단위로 부과함.

-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, 부과는 어떻게 적용되는지?

·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15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.

* 예시 : 올해 2월 점검시 종사자 5명에 대해 결핵 검진 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부과했다면, 내년 2월에도 5명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이 부과됨.

· 위반 회차와 관련하여, 점검 시 전체 종사자(ex. 100명) 중 미수검자가 1명 또는 100명이어도 위반 회차 1회에 해당됨.

-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 검진 등(결핵·잠복결핵)을 실시하도록 종사자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종사자가 결핵 검진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?

· 의료기관의 장이 그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 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가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.

· 다만,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.

-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